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김계순, 홍원길, 배강민

1. 제안이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한 미디어 환경 활성화를 지원하고 영상·영화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지원(안 제4조~제5조)
- 라.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도감독(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 ~ 2021. 11.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1. 11. . ~ 2021. 11.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미디어"란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매체 등을 말한다.
- 2. "마을공동체미디어" 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화·영상 등의 미디어 문화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재정확보 및 민관협력 방안 수립
 - 2.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3. 미디어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된 사업
- 2.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지원 사업
- 3. 미디어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 4.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 5. 영화 · 영상 관련 우수 미디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6. 장애·고령·외국인 등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의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 7. 김포시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 8. 그 밖에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김포시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김포시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김포시의 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업무 관련 김포시 출자·출연기 관,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